

환자 권리와 의무

관리번호	W-7.1.1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원무과,진료부,간호부	검토주기	3년
관련근거	의료기관인증기준7.1.1	검토예정일	2019년 10월 30일

I. 목적

윌스기념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환자가 진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규정

- 1. 환자의 권리
 -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환자의 의무
 -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Ⅲ. 절차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연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 1) 입원환자는 입원 시 입원생활 안내문을 통하여 설명한다.
- 2) 외래환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환자는 다음과 같이 진료과정에 참여한다.
 - 1) 대상 : 병원에 내원한 모든 환자
 - 2) 검사, 시술, 치료계획, 퇴원계획 등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정에 참여한다.
 - 3)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상태, 제안된 치료, 잠재적 효과 및 단점, 가능한 대안,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 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등을 포함한다.
 - 4)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
 - 5) 계획된 진료의 취소 또는 진료가 시작된 이 후 이를 중단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4.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한다.
 - 1) 내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생활 보호가 가능함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입원사실, 병실조회,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 2) 환자의 사생활 보호 요구를 확인하고 사생활보호요청서 [별첨 1]를 작성 후 원무과에 제출한다.
 - 3) 원무과에서는 사생활 보호 요청 즉시 의무기록에 등록하며, 관련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4) 사생활 보호 요구 환자는 의무기록 화면에 '사생활보호'가 표시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번호 밑에 녹색줄 및 사생활보호 표시되어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다.
 - 5) 진료과정동안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5. 환자의 신체노출을 보호한다.
 - 1) 진료실과 환자 대기 장소를 구분하여 진료하는 동안 다른 환자가 진료실 내에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 2) 진료나 검사, 간호 과정에서의 신체적 노출 등으로 환자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스크린 또는 커튼을 이용하여 가려주도록 한다.
- 6.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하여 [W-12.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에 따른다.

IV. 참고

- 1. 의료법 제 4조
-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 3. 보건의료 기본법 제 1장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4. 보건의료 기본법 10조(건강권 등)
- 5. 보건의료 기본법 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 6. 보건의료 기본법 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



[별첨]

별첨1. 사생활보호요청서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별첨 1] 사생활보호요청서

사생활보호요청서

이름	생년월일			
구분	□ 외래 □입원 ()호			
사생활보호 요청 내용				
진료정보	□ 본인 외 일체 발급금지			
진료비정보	□ 진료비 금액 □ 진료비 내역			
기타	□ 나이 □ 기타			
사생활 보호 변경 요청				
□ 해지				
□ 기타				
	사생활 보호 요청 기간			
□ 항시 □ 입원기간 경 □ 지정(
년				

윌스기념병원장 귀하